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4 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민석·한정애·서영교

장경태 • 박홍배 • 강선우

남인순 · 박희승 · 김영호

김남희 · 채현일 · 정준호

강득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,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 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,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 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더욱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추세를 볼 때,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 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

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	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
입비 등의 보조) ①・② (생	입비 등의 보조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
	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
	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